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구 미 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구미시는 '15. 4월 산업부의 3D프린팅 대경거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본 공모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내 「대경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구축된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 인프라와 (사)3D프린팅산업협회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지원, 3D프린팅 전문가 육성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
- 이에 구축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3D프린팅 대경거점센터로서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사용료 감면
 - 위치 :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금오테크노밸리 내
 - 사용주체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감면기간 : '20. 7. 1. ~ '25. 6. 30. (5년)
 - 사용면적 : 696.5㎡(1층 507.5㎡, 2층 189㎡, 9개호실)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4. 참고사항

○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개요

- 위 치 :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금오테크노밸리 내
- 규 모 : 3,882.9㎡, 지상1층 ~ 4층(총 29개호실 임대가능)
- 건 립 비 : 35.7억원(도11, 시 24.7) ※ 준공일 : '16. 2. 29
- 사업내용 : 3D프린팅 센터구축,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 운영방법
 - 건물 운영 및 관리: 구미시(신산업정책과) 직접운영
 - 3D프린팅 대경거점센터 운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수행기관)

○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 입주현황(입주율 89%)

(20.6.30 현재)

연번	업 체 명	입주호실	사용면적(㎡)	인원	사용기간
계		26개	1,893.5㎡	35	
1	3D프린팅산업협회 경북지회	204, 208	94.5	1	'19.4.1~' 24.3.31
2	3D프린팅산업협회	205, 208-1, 209	126	2	'19.4.1~' 24.3.31
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01, 101-2 104~106, 202, 203, 210, 211	696.5	6	'19.7.1~' 20.6.30(2층) '19.7.1~' 20.6.30(1층)
4	(주)하이엘스	209-1	31.5	2	'20.2.1~23.1.31
5	(주)네콘	302, 303	126	8	'18.8.7~ '20.8.6
6	와우쓰리디	304	63	2	'18.8.20~' 21.8.19
7	아이파이브	305	63	4	'19.8.12~ '21.12.31
8	(주)티엘비즈	308	63	4	'17.9.13~' 20.9.12
9	창조경제혁신센터	402~407	630	6	'16.4.1~' 21.3.31

*8.7부터 2개호실 추가입주 예정

위치도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별 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 관 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13. 삭제 <2011.12.31>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구축된 3D프린팅제조혁신지원센터가 대경거점센터로서 제품개발,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3D프린팅 전문가 육성 등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재정수반요인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간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연간 임대료 : 약 31,225천원)
- 계산식 = 사용면적 X *월사용료 X 사용개월 수

$$= 696.5\text{m}^2 \times 3,736\text{원} \times 12\text{월}$$

$$= 31,225,488\text{원/년}$$

*월 사용료는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를 적용

4. 작성자

- 신산업정책과 융합산업계장 채창수(6171)
- 신산업정책과 행정9급 최진식(6175)

소관 실·과		신산업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김 창 열
	담 당	채 창 수
	담 당 자	최 진 식 (480-6175)